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5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위성곤·김성환·이소영

임미애 • 박지혜 • 박정현

박지원 • 윤건영 • 정진욱

정일영 · 허성무 · 박희승

김문수 · 박민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, 히트펌프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.

국제에너지기구(IEA)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 톤(t)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재생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.

실제로 유럽연합(EU), 미국,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히트펌프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. 행정·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입법·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술 발전 수준과 해외 정책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기구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에너지량 확보 및 전력 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임. 이로인해 히트펌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법·제도적 지원이 미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 및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'수열 및 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(heat pump)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'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,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을 지원하며,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(안제2조제2호아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"를 "햇빛·공기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"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수열 및 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(heat pump)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. 다만, 인위적 공정에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하며, 재생에너지로 인정 가능한 미활용 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혀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"재생에너지"란 <u>햇빛·물·</u> 2. ----- <u>햇빛·공기·</u> 지열(地熱)・강수(降水)・생 | 물・지열(地熱)・강수(降水) 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 ·생물유기체 -----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 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~ 사. (생 략)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수열 및 공기열 등 자연 <신 설> 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 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 원을 히트펌프(heat pum p)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 지. 다만, 인위적 공정에 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 하며, 재생에너지로 인정 가능한 미활용 열원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

	<u>다.</u>
<u>아</u> . (생 략)	<u>자</u> . (현행 아목과 같음)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